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0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/ 대표자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신경기 종합건설(주) / 김**	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323, 1층 2호	건축공사업 01-4466	영업정지 4개월 (2021.9.17. ~2022.1.16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- '19.01.01.~'20.09.30. 기술인력 기준 (5인) 미달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